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변경 〉

■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28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변경	2
※ 참고자료	12
1. 환경성적표지 제도 개요	12
2. 환경성적표지 인증 절차	13

I. 제안경위

2024년 6월 25일 김영진위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환경성적표지’와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 중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는 제품의 원료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임.

그런데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친환경성을 인정하여 부여하는 ‘환경표지’ 인증제도와는 개념과 성격이 상이하지만 그 명칭이 유사하며 실제 그 개념상 특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일반 국민에게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현재의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환경성적표지가 포함하는 자원발자국·탄소발자국·물발자국 등의 기존 제도를 포괄할 수 있고, 향후 국가 간 상호인정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제기준으로서 유럽연합의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 Footprint, PEF) 용어와 유사한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8조 등).

Ⅲ. 검토의견

1.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변경

개정안은 ‘환경표지’ 인증제도와 혼동 방지를 위하여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8조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①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8조에 따라 <u>환경성적표지</u> 의 인증을 받은 자	4. ----- <u>환경발자국</u> ----- -----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u>환경성적표지</u> 의 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재료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	제18조(<u>환경발자국</u> 의 인증 등) ① - ----- ----- ----- ----- -----

현행	개정안
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u>환경성적표지</u>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환경성적표지</u>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생략) ③·④ (생략)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u>환경성적표지</u>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⑦ (생략)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u>환경성적표지</u>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 ----- -----<u>환경발자국</u>----- -----. ② ----- -----. 1. <u>환경발자국</u>----- -----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u>환경발자국</u>----- -----. ⑥·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환경발자국</u>-----

현행	개정안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7. 8. (생략) 제20조(<u>환경성적표지</u>의 인증신청 등)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u>환경성적표지</u>의 인증 대상이 되는 재료와 제품의 선정·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u>환경성적표지</u>에 관한 작성지침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u>환경성적표지</u>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u>환경성적표지</u>의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u>환경성적표지</u>가 제1항에 따른 <u>환경성적표지</u>에 관한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이에 맞게 작성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u>환경성적표지</u>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 ----- - 7. 8. (현행과 같음) 제20조(<u>환경발자국</u>의 인증신청 등) ① -----<u>환경발자국</u>----- ----- -----<u>환경발자국</u>----- -----. ② <u>환경발자국</u>----- -----<u>환경발자국</u>----- -----. ③ ----- -----<u>환경발자국이</u>-----<u>환경발자국에</u>----- ----- ----- -----. ④ -----<u>환경발자국의</u>----- ----- -----.

현행	개정안
한다. 제21조(인증심사원) ① <u>환경성적표지</u>의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 및 심사원이 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제22조(환경표지 등의 사용) ①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 또는 <u>환경성적표지</u>(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容器) 등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① (생략) ② 인증기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u>환경성적표지</u>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1조(인증심사원) ① <u>환경발자국</u>----- ----- ----- -----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환경표지 등의 사용) ① --- ----- -----<u>환경발자국</u>-----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u>환경발자국</u>----- ----- ----- -----. ----- -----.

현행	개정안
1. (생략)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와 제품에 <u>환경성적표지</u>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3. <u>환경성적표지</u>의 인증을 받은 재료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u>환경성적표지</u>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u>환경성적표지</u>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나 <u>환경성적표지</u>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30조(청문 등) ① (생략) ② 인증기관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u>환경성적표지</u>의 인증을 취소하려면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1. (현행과 같음) 2. ----- -----<u>환경발자국</u>----- ----- 3. <u>환경발자국</u>----- ----- ----- ----- 4. -----<u>환경발자국</u>----- ----- ----- ③ -----<u>환경발자국</u>----- ----- -----. ④ ----- -----<u>환경발자국</u>----- -----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청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환경발자국</u>----- -----

현행	개정안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생략)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 4의4. (생략) 5. 제17조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 제18조와 제23조제2항에 따른 <u>환경성적표지</u>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업무: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6.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의4. (현행과 같음) 5. ----- ----- -----<u>환경</u> <u>발자국</u>----- ----- ----- 6.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발자국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인증을 신청한 자)는 이 법에 따른 환경발자국의 인증을 받은 것(인증을 신청한

현행	개정안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기관이거나 인증심사원이었던 자는 이 법에 따른 환경발자국의 인증기관 또는 인증심사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의2 중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환경발자국의 인증”으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으며¹⁾,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는 제품의 제조·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환경성을 계량화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것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²⁾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작성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한다.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재료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 법 제18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2.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침」 제3조는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7대 범주로 구분하고 있음.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환경부고시 제2022-155호)]

제3조(환경성적표지의 표시내용) ①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의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자원발자국 : 광물, 화석연료 등의 개발 및 소비로 인한 지구 자원에 미치는 영향(폐기물 발생 및 자원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결과
2. 탄소발자국 :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물질이 대기로 배출되어 지구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결과
3. 오존층영향 :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이 대기로 배출되어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결과
4. 산성비 : 대기 중의 산성화물질(NO_x , SO_x)이 빗물에 녹아 지표로 떨어지면서 인간활동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결과
5. 부영양화 : 대기, 수계, 토양에 질소, 인 등 유기물질의 농도가 과다해짐에 따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결과
6. 광화학 스모그 : 인간 활동으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빛과 반응하여 생성된 지표면의 오염물질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결과
7. 물발자국 : 인간 활동이 수질, 수량 등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결과
② 환경성적표지의 탄소발자국 산정 결과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의2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저탄소제품으로 표시한다.

[환경성적표지 인증 현황]

(2023.12. 기준, 단위 : 제품 수)

구분	'01~'15	'16	'17	'18	'19	'20	'21	'22	'23
누적	8,859	2,570	2,823	3,068	3,504	4,168	4,807	5,773	6,927
신규	1,965	303	253	245	436	673	630	926	1,194

※ 출처: 환경부

한편, ‘환경표지’ 인증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환경표지’ 로고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³⁾으로, ‘환경성적표지’와 ‘환경표지’는 그 성격이 상이함에

3. 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4.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5.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6. 폐기물 발생 및 자원순환에 미치는 영향
7.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8. 그 밖에 환경오염 관련 정보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도 용어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할 소지가 있음.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비교]

구 분	환경표지 인증제도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로고		
법적근거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	「환경기술산업법」 제18조
목적	환경표지 표시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 개선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환경표지 인증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증가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유도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주도의 녹색소비 촉진
인증기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경우 “환경표지” 인증 *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화하여 표시 * 환경성 정보 : 자원발자국, 탄소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물발자국

※ 출처: 환경부

이에 개정안은 ‘환경성적표지’의 용어를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⁴⁾, ‘발자국’이라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제도의 이해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EU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관련 제품 인증과 관련하여 ‘발자국’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 4) 또한, 개정안은 명칭 변경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는 개정안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등의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발자국’ 용어 사용 해외 사례]

국가별 제도명	주요 내용
EU 제품환경발자국 (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PEF))	○ EU는 2013년 ‘친환경제품 단일시장계획’을 발표하고, 제품의 전과정 환경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론을 개발 중 - 이에 따라 제품의 전과정 환경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제품환경발자국(PEF*: 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을 개발하여 사용권고 * 제품 전과정(원료 채취, 생산, 수송·유통, 소비, 폐기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계량화하여 표시하는 제도로 국내 환경성적표지 제도와 유사
영국 탄소발자국 (Carbon Trust Product Footprint Certification)	○ 도입시기: 2007년 ○ 인증기관: Carbon Trust(민간) ※ 영국의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 표준(PAS 2050) 개발 주도 ○ 특징: 탄소배출량, 저탄소제품, 탄소중립 등 단계별 인증 시스템 구축 ○ 인증제품: 식·음료, 가전제품 등 2만 7천여 제품 인증
일본 탄소발자국 (Carbon Footprint of Products(CFP))	○ 도입시기: 2009년(3년간 시범사업 후 2012년 도입) ○ 인증기관: SuMPO* * Sustainable Management Promotion Organization ○ 인증제품: 건축재재, 프린터 등 880 여개 제품 인증
대만 탄소발자국 (Carbon Footprint of Products(CFP))	○ 도입시기: 2009년 ○ 인증기관: 대만 환경청(법적 제도) ○ 특징: 탄소배출량, 저탄소제품 인증으로 구분 ※ 저탄소제품 인증 시범사업 추진('14~'17) ○ 인증제품: 식품, 조명, 건축자재 등 497개 제품
태국 탄소발자국 (Carbon Footprint of Products(CFP))	○ 도입시기: 2009년 ○ 운영기관: TGO(공공) ○ 인증제품: 식품, 화장품 등 7,157개 인증 ○ 특징: 탄소배출량, 저탄소제품, 탄소중립 등 단계별 인증 시스템 구축
중국 탄소발자국 (Low-Carbon Product Certification)	○ 도입시기: 2009년 ○ 운영기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AQSIQ),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 인증제품: 7개 제품군 대상(포틀랜드 시멘트, 알루미늄 프로파일, 세라믹 타일, 유리판, 중소형 3상 비동기 모터, 섬유, 타이어) ○ 특징: 법정 임의 인증

※ 출처: 환경부

문 의 처

02)6788-5541

※ 참고자료

1. 환경성적표지 제도 개요

□ 사업 개요

- **(목적)** 소비자에게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주도의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체계 구축 기여
-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 정의
 - **(환경성적표지)** 제품 및 서비스의 전과정(원료채취→제조→수송→사용→폐기)에서 발생한 환경성 정보를 7대 범주*별로 계량화하여 제품에 표시
 - * 자원발자국, 탄소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물발자국
 - **(저탄소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중 원료연료 대체나 공장효율 개선을 통해 종전보다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저탄소제품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1단계) 환경성적표지 인증



(7대 범주별 환경성 정보 표시)

(2단계) 저탄소제품 인증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표시)

□ 추진현황

-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 **(추진성과)**
 - 환경성적표지 제도 시행('01) 및 인증기관 지정('07)
 - 탄소성적표지 제도 도입('09) 및 저탄소제품 인증 도입('11)
 - 환경성적·탄소성적표지 제도 → 환경성적표지 제도로 통합('16)
 - 환경성적표지 도안 변경('01년 제정, '17년 개정)
 - 저탄소제품 인증제품이 '녹색제품' 반영 및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포함('20.7.~)



2001년~2016년



2017년~현재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1) · 시행('20.7.30) 및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 제정('20.8.24)

2. 환경성적표지 인증 절차

